

制度的 義務

禹 明 燥

一. 序 言

制度가 갖는 역할을 잘 이해하면 義務에 대한理解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우리는 제도에 수반하는構成的規則이라는 하나의根源的인規則에 대한 이해를通해서 義務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¹⁾ 이런점을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J.R. Searle의 견해에서 엿볼 수 있다. Searle은 制度를 전제로한制度的事實들이構成的規則들에 의해支配된다는 것을根據로하여事實的前提로부터 義務概念이 들어있는評價의結論을 도출하고 있다.²⁾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어떤 하나의 의무가 전적으로制度의構成的規則에 의해支配되는 경우, 그 義務를 사실적性格을 具する制度의 義務로 한정시켜 이해함이 적절하다는 점을 밝혀보려는 것이다. 그러한 이해는構成的規則들과 'ought'概念의 분석을 통해 가능해진다. 나이가 이러한制度의 義務의性格에 대한 이해를 발판으로道德的當爲判斷과의 관계를設定해서 도덕적당위에 대한 이해를 돋고, 현재에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道德性(morality)내지는 도덕적 판단들의性格을究明하는努力의一環이 되고자 한다.

二. 制度와 規則

1. 制度의 事實

制度에 대해 John Rawls는 “權利 및 義務, 權限 및 免除 등을 가지는職責과 地位들을規定하고 있는諸規則의 公的인體系라는 뜻으로 이해하면서 이를規則들은 일정한형태의 행동을 허용가능한 것으로 또는 금지되는 것으로 명시하며 또한 이에 대한違反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정한刑罰을 가하고 處罰을 준다고 말하고 있다.³⁾ 그러나 더 포괄적인 뜻으로, 制度는 형벌이나法律體系, 大學, 銀行等의 표준적인社會制度만에 국한하지 않고 이미 사회적으로 잘 확립된秩序나 規律體系라면 어떤 것이나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도를 전제하고 있는 사실들이制度的事實이다. 이러한 제도적 사실은 우리의

1) 構成的規則에 대해서는本文 참조.

2) "How to derive 'Ought' from 'Is'" (Philosophical Review, LXXIII, 1964) 참조

3) Rawls,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 Harvard, 1973), p. 55.

制度內에서만 존재하는 사실로서 예컨대 “X는 Y와 결혼했다” “의회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는 홈런을 쳤다”……等과 같이 무수히 많은例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제도적 사실들은 제도를 떠나서는 바로 그와같은 사실묘사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제도를 떠나서 그러한 사실들을 묘사해보려 한다면 “그는 홈런을 쳤다”的 경우, “그는……게 방망이를 휘둘렀다”와 같은 원초적인 수준에서 묘사가 끝날 수 밖에 없고 내가 가진 500원짜리 지폐는 여러 색깔과 마크가 달린 종이 조각으로 묘사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묘사로 끝난 사실들은 원초적 사실(brute facts)이라고 할 수 있다.⁴⁾ 또한 이들 원초적 사실들은 그로부터 制度的事實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그 제도적 사실에 대한 상대적 원초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規範的規則과構成的規則

ㄱ. 規範的規則(Regulative Rule)

다음 章의 理解를 위해 規範的規則과構成的規則에 대해 간단히 言及해 본다.

Searle에 의하면 규범적 규칙은 이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행위의 형태를 규정하는 규칙이라고 한다.⁵⁾ 이러한 규칙들中 대표적인 것은 禮儀凡範에 관한 많은 규칙들로서, 이들 규칙들은 그 규칙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내면적 인간관계를 規定하고 있다. 이러한 규칙들의 特性은 명령문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음식을 자를때는 칼을 오른손에 쥐어라.” “방안에 들어갈 때는 모자를 벗어라.”……等과 같은 것으로 이러한 규칙들은 그 규칙들이 존재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그 규칙들과一致하는 행위가敍述되듯이敍述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어떤 禮節行爲에 관한 서술, “그는 방안에서 모자를 벗었다”은 “방안에서는 모자를 벗어라”라는 規則의 존재여부에 관계없이 가능한 것이다.

ㄴ. 構成的規則(Constitutive Rule)

規範的規則과는 달리 “構成的規則은 단지 既存의 行爲를 規定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行爲 형태를 創造하고 定義(define)한다”⁶⁾ 우리는 이숙한 게임을 모델로 하여 구성적 규칙을 잘 설명할 수 있다.⁷⁾ 구성적 규칙은, 이를테면 축구나 장기게임의 규칙들과 같은 것인데, 이들 규칙들은 단지 축구나 장기게임의 행위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런 게임의 成立을 가능케 한다. 그래서 Searle은 “구성적 규칙은 그 규칙에 논리적으로 의존하는 행위를 규정한다”고 말하고 있다.⁸⁾ 만일 그러한 규칙이 없다면 “그들은 축구게임을 했다”거나 “장기게임을 했다”라는 묘사가 불가능하게 된다. 규칙이構成的인 경우에는 그 규칙에 —

4) brute facts에 대해서는, G.E.M. Anscombe, “On brute fact”(Analysis 31, March, 1958) 참조

5) Searle, Speech Acts (New York: Cambridge, 1969), p. 33.

6) Ibid., p. 33.

7) 이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 T.C. Mayberry, “Morality and Its Analogues,” Mind, 80(May, 1971), 365-372.

8) Searle, op. cit., p. 34.

致하는 행위는 서술될 수 있지만 그러한 규칙이 없다고 한다면 비록 그 규칙에 일치하는 행위와 유사한 행위가 일어났을지라도, 규칙이 있을 때의 행위가 서술되듯이 서술될 수는 없다. “그들은 축구게임을 했다”라는 서술의 경우構成的規則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한 서술은 자연히 불가능하며, 비록 22명의 사람들이 축구게임에서의 두팀이 움직이는 것과 유사하게 움직일 수 있을지라도 그들의 행위에 대해 “축구게임을 했다”라는 서술을 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많은 社會的行爲들은 禮節에 관한 規則들이 없을지라도 그런 규칙들에 일치하는 서술과 같게 서술될 수 있다. 그러나構成的規則들을 게임의 규칙들에서 보듯이 그 규칙들이 없다면 서술됨이 불가능할 바로 그러한 行爲敘述의根據가 되고 있다. 물론規範的規則들도 “그는 무례했다” “그는 非道德의이었다”……等에서 보듯이 行爲評價에 대한 근거를 줄 수 있다. 이러한 평가들은 그러한 規範的規則들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면 불가능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評價함”은 서술이나 묘사가 아니다.

이러한構成的規則들, 가령 장기게임에서 “장군은 王이……式으로 공격받을 때 일어난다” 축구게임에서 “골인은 상대방 골문안으로 볼을 차 넣었을 때 일어난다”……等은 곧 “장군”과 “골인”에 대한 定義(definition)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同語反復의 性格을 띠고 있으며 장기게임에서의 “장군”과 축구게임에서의 “골인”的 意味分析에 기초한 分析的眞理로 볼 수 있다. 이 규칙들은 장기의 규칙들이 장기를 定義하고 축구의 규칙들이 축구를 定義하는 것과 같이 각각 장기에서의 “장군”과 축구에서의 “골인”에 대한 정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構成的規則들은 또한 “X는 어떤 문맥 C에서 Y로 간주한다”(X counts as Y in certain context)의 형태로 적절히 表現될 수 있다.⁹⁾ 구성적 규칙들은 體系內에 속하므로 이런 형태가 체계내의 개별적인 규칙에 대한 것이 아니라 體系自體에 대한 것일 수 있다. 즉 어느 게임의 한 규칙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게임을 成立시키는 多數의規則들로 된 體系에 대한 것일 수 있다.¹⁰⁾ 또 體系內에서 Y에 해당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단순한 標識가 아니라 어떤 結果의 產出을 內包하고 있다.¹¹⁾

以上을 간추려보면構成的規則이란 새로운 행위의敘述을 가능케 해 주고 分析的眞理의 性格을 갖고 있으며 “X는 Y로서 간주한다”라는 형태로 적절히 표현될 수 있는規則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構成的規則들과 制度的事實과의 관계를 알아보자. 約束行爲에 상대적인 원초적 사실로부터 “그는 約束했다”라는 하나의 制度的事實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어도 하나의 구성적 규칙이 필요하다. 이 규칙이 없다면 어디까지나 원초적 사실에 관한

9) Ibid., p. 36.

10) 예를 들어 ‘축구게임은 각팀 11명으로 해서 진행된다’는 그 자체로는 위와 같은 형태에 부적합할지라도 그 게임의 상당수의 규칙들과 일치하는 행위는 축구게임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말이다.

11) 게임에서 ‘장군’이나 ‘홈런’ 등은 승리나 득점의 결과를 가져온다.

서술에 그칠 것이다.¹²⁾ “적어도 하나의 구성적 규칙의 附加 없이 制度 的事實에 관한 언명을 含意할 수 있는 원초적 사실들로 이루어진 언명들이란 없다”¹³⁾ 따라서 모든 제도적 사실들은 構成的 規則의 體系 内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三. 制度的義務

1. 構成的 規則에 따른 義務

우리는 前章에서 貫行, 規範等을 包含해서 폭 넓게 定義되는 制度의 規則들이 단지 이미 존재하는 行爲形態를 규정하는 規範的 規則들만이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行爲를 規定, 構成해 주는 構成的 規則들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이 構成的 規則의 意味를 조금 확장시켜 다음과 같이 理解할 수 있다. 즉 體系 内의 상당한 규칙들과一致한 行爲가 묘사되어질 경우, 어떤 규칙이 그러한 규칙체계의 한 構成要素이기만 하면 그 규칙은 構成의이다.¹⁴⁾

여기서 제도의 구성적 규칙들과 그 규칙들이 禁하고 許容하고 要求하는 行爲와의 관계를 해석하는 方法을 다음과 같이 提示해 본다.

A) 어떤 상황 C가 일어날 때 P에게 S를 하도록 허용케 하는 規則이 制度 内에 있기만 하면 P는 그 상황 C에서 S를 할 권리(權利)를 갖는다.

B) 어떤 상황 C가 일어날 때 특별히 S를 행할 것을 要求하는 규칙이 制度 内에 있기만 하면 P는 그 상황 C에서 S를 할 의무(義務)를 가지며 특별히 S를 행할 것을 금지하는 규칙이 있기만 하면 P는 그 상황 C에서 S를 하지 않을 의무(義務)를 갖는다.

C) 만일 S를 행함이 制度 内에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도 특별히 금지되어 있지 않다면 P는 S를 하는데 자유이다.

以上의 A)~C)는 論爭의 여지가 있는 것이지만 制度的義務를 이해하는 유력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위에서 우리는 몇가지 점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로 권리(權利)를 이해하는 방법은 제도내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사람에게 주어진 허가로서 이해한다는 것이다.¹⁵⁾ 둘째로 권리(權利)는 언제나 制度內의이라는 것이다. 자연적 권리(自然的權利)라는 것은 없다고 본다.

12) 前節에서 말한 ‘제도를 떠나서는……’은 곧 ‘제도에 관한 구성적 규칙을 떠나서는……’을 意味한다.

13) Searle, Speech Acts, p. 185.

14) 이 말은 어떤 하나의 규칙이 그 자체로는 行爲에 관한 새로운 묘사를 가능하게 하지 못할지라도 새로운 묘사를 가능하게 하는 규칙들로 된 체계의 構成要素인 한 그 규칙은 구성적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Searle에 의하면 모든 구성적 규칙이 새로운 묘사를 가능하게 한다.

15) 어떤 것을 할 權利를 갖고 있다는 것은 行爲자가 갖는 어떤 속성을 뜻하기보다는 범족없이 정당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왜냐하면 허용을 해 준다는 구조 자체가 제도의 문맥을 떠나서는 成立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나는 내 나라의 法的 制度의 규칙들에 의해 나의 생존권을 가질 수 있지만 내가 출생했다는 사실에 의해 그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¹⁶⁾ 허용한다는 것이 순전히 제도적인 일이라는 것은 허용하는데 사용되는 文章들이 나타내는 행위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가를 검토해 보면 분명해진다. 제도가 갖는 구성적 규칙들이 없다면 그러한 행위묘사는 불가능하다. 즉 그러한 행위묘사는 제도의 구성적 규칙들에 의해 特別한 의미가 주어지는 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특정한 게임에서 허용하는 상황과 관련된 권리의 표현은 그 게임의 문맥 밖에서는 成立될 수 없다.

셋째로 “P는 어떤 것을 할 권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문장은 P의 제도적 상황에 관한敍述이다. 이것은 “P는 제도의 규칙들에 의해 어떤 것을 하도록 허용되었다”라는 문장과 동등한 것으로 이해된다. 後者의 문장은 분명히 真이나 假인 문장이다. 따라서 P가 상대방 문전으로 질주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문제는 원칙상 축구장 주위의 관람석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문제와 다르지 않다.

네째로 지금까지 權利에 대해 言及한 것은 또한 義務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즉 “P는 어떤 것을 할 義務를 가지고 있다”라는 문장은 P의 제도적 상황에 관한敍述을 意味한다. 그 文章은 “X는 어떤 제도의 규칙들에 의해 일정한 일을 하는 것이 要求된다”라는 문장과 동등한 것으로 이해되어 진다. 이점은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다.

2. 制度的 義務의 事實性

前節에서 示唆된 점을 토대로하여 좀 더 制度的 義務의 性格을 究明해 본다. 지금 장기 게임에서 甲은 장기게임의 규칙에 의해 乙의 말을 제거할 권리가 갖고 있는 상황이 일어났다고 하자. 그렇지만 甲은 乙의 말을 제거할 義務는 없는 것이다.¹⁷⁾ 게임은 甲이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해도 계속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만일 甲이 乙을 不利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나아가 그 게임을 이기고자 의도한다면 그는 乙의 말을 제거해야 한다(ought). 이 경우의 “제거해야 함”에서의 “ought”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관한 “ought”(prudential ought)이거나 게임 전술상의 “ought”(tactical ought)이다. 이러한 “ought”는 장기게임의 규칙 자체로부터 도출된 것이 아니다. 이제 게임이 막판에 이르러 甲은 만일 그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면, 乙을 게임에 지고 게다가 자기에게는 부담이 거의 안되지만 乙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는 내기를 건 상태에서 乙이 敗함으로써 그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이 매우 곤경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자. 이러한 상황에 대해, 甲이 어떤 일(제거함)을 할 권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行使해서는 안된다(ought not)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16) 자연의 상태란 단지 義務가 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권리도 없는 상태를 말한다.

17) 내가 나의 물건을 처분할 권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이 내가 그 물건을 처분할 의무를 갖고 있다 는 것을 含意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경우의 “해서는 안됨”(ought not)은 분명히 게임 전술상의 表現이 아니며 그것의 효과는 打算的인 “ought”(prudential ought)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장기라는 게임 밖에 있는 것이다.¹⁸⁾ 甲이 그의 권리를 행사함으로 해서 비난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한 장기라는 게임 내에서 볼 때는 그런 비난을 받을 아무런 근거도 없다. 즉 장기게임의 규칙들은 게임 當事者들의 경제상태나 내기……等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 주는 바가 없다.

이제 앞에서 말한 打算的이고 戰術的인 “ought”的 사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ought”에 관한 言明들이 제도적 문맥속에서 이루어질 경우 그러한 언명들은 評價의 뜻이 들어 있는 의무에 관한 언명들이 못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制度的 義務들, 즉 특별한 制度에 그 자신이 참여함으로써 개인에 의해 생기는 의무들은 “ought”에 의해 표현되기 보다는 사실의 뜻이 담긴 “must”에 의해 적절히 표현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前述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甲은 乙의 말을 제거해야(전술상의 ought) 하는 반면 乙은 그의 말들이 제거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안된다(must)는 점에 있다. 즉 乙은 그렇게 허용함이 요구되는 제도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

以上으로부터 “ought”的 사용은 행위자에게 選擇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상대방의 말을 제거할 수 있지만 제거하지 않을 경우) 그러나 “must”的 경우는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 “must”的 사용은 행위의 과정이 불가피함을 말해 준다. 물론 한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결정적 공격을 받는 바로 그 때에 장기게임을 그만 둠으로써 자기의 王을 움직여야하는 제도의 규칙에 의한 要求를 언제나 회피할 수 있다. 이런점이 제도적 의무에서도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乙은 만일 그가 게임을 계속하기를 원한다면 甲의 공격으로부터 그의 王을 움직여야 한다”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표현(……를 원한다면)은 게임내가 아닌 게임외로 관심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즉 게임내의 말의 進行으로부터 게임외인 乙의 마음상태, 원함 등으로 관심을 돌린 경우이다. 만일 우리가 장기게임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게임의 일정한 상황속에서 어째서 그의 말을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움직였는가?라고 물을 때 그의 답변은 “내가 게임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게임의 규칙이 그와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must) 것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거나 “다음의 지도적 進行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等으로 될 것이다. “ought”를 제도적 의무를 표현하는데 사용하기를 고집한다면 그러한 “ought”는 아주 특별한 “ought”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제도적 ought”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전달하는 의미는 보통 “must”가 전달하는 意味와 차이가 없다.¹⁹⁾ 따라서 제도적인 문맥에서는 “must”가 더 적합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非制度的

18) 이 경우의 ‘ought not’은 도덕적 ‘ought-not’이라고 부를 수 있다.

19) 그러한 제도적 ‘ought’는 또한 ‘……하지 않을 수 없다’의 형태로 표현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인 문맥에서는 물론 制度의 문맥에서 “must”를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우리는 금지나 구속력 있는 要求를 表現하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제도적 의무에 관한 언명들에서 “ought”를 사용하는 것은 오해되기 쉽다. 만일 장기게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定義할 경우, “그 게임의 구성적 규칙들이 바로 그것들과一致하는 행위를 장기게임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의미로 정의한다면 그 구성적 규칙들은 어떤 사람이 장기게임을 하면서 그 규칙들과一致하지 않게 행위하는 가능성을 배제해야만 한다. 만일 그러한 규칙들로부터 도출되는 制度의 義務에 관한 言明들이 행위자에게 “구속력 있는 요구”的 의미를 주지 못한다면, 달리 말해서 “ought”의 경우처럼 “선택적 요구”的 의미를 준다면 규칙들과不一致한 행위의 가능성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제도적 의무에 관한 言明들은 制度內의 참여자에게 행위에 대한 구속력 있는 요구를 전달해야만 (must) 하고 “P는 S를 해야만 한다”로 形式化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만 되는지 어쩐지 하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그의 제도적 상황에 대한 올바른 묘사를 찾는데 달린 단순한 사실의 문제로 되었으며 그러한 묘사는 일정한 종류의 제도적 규칙에 의해 가능해진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제도적인 “must”를 “(어떤것을)하는 것이 요구되는”이라는 詞語와 대등하게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 道德的當爲와의 관계

前節에서 制度의 義務에서의 “ought”는 事實性을 떤 “must”的 意味로서 적절히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적 의무는 道德的營爲判斷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지금 어떤 사람이 두 가지 제도적 의무 a, b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다고 하자.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물음이 提起될 것이다. “그는 규칙 A에 따른 a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규칙 B에 따른 b를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결정적인 답변이 制度의 義務와 확연히 구별되는 道德的當爲判斷(Moral Ought Judgement)의 典型이라고 볼 수 있다.²⁰⁾ 제도의 논리는 이러한 물음에 아무런 해결책도 주지 못한다. “만일 두개의 대립되는 義務가 있고,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決定을 내려야 할 때, 이미 두가지 의무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으로, 그런 상황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진정 나의 의무인가?’로 묻기 보다는 ‘나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로 묻게되는 것이다.”²¹⁾

前述한바대로 “ought”에는 수 많은 用法이 있다.²²⁾(타산적, 전술적, 제도적 ought등) 제

20) 이것이 모든 도덕적 당위 판단의 用法이 언제나 의무의 대립속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1) Richard Brandt, “The Concepts of Obligation and Duty,” Mind, LXXIII, 291 (July 1974): 374-93.

22) 이 점에 대해서는 Harry Beran, “Ought, Obligation and Duty,”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Vol. 50, No. 3 (December, 1972) 참조

도적 의무들의 대립속에서 어느 한 의무를 우선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ought”가 사용되어질 때 이 用法은 典型的으로 道德的이다. 우선성에 관한 判斷들은 분명히 그것에 대한 어떤 구조에 의존하고 있고 그 序列計劃은 가치있는 삶의 필요조건들에 관한 공동체의 認識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그러한 조건들에 대해 보다 많이 암에 따라서, 그들에 대한 믿음이 변화함에 따라서 어떤 制度의 義務는 높이 評價하고 다른 制度의 義務는 낮게 평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展望할 수 있을 것이다. 最上의 世界, 혹은 社會共同體內에서는 그 社會共同體의 모든 構成員들이 그들의 制度의 義務를 지체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다. 그러한 세계에서는 도덕적 당위판단들의 역할이 없어지게 되고 아울러 道德的 義務란 것이 없게 될 것이다. 그보다 下位인 세계에서, 동시에 수행하여야 할 두가지 以上의 대립하는 義務들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이때에 道德的 當為判斷들과 道德的 原理(moral principle)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도덕적 원리는 가치있는 삶의 가능성을 위한 필요조건들과 관련해서 社會共同體의 구성원들이 함께하고 있는 일련의 기본적인 믿음을 말한다. Julius Kovesi는 도덕적 원리들은 도덕적 견지에서 볼 때 완전한 관념(complete notion)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판단들과 구별하고 있다.²³⁾ 이를테면 “살인은 잘못이다(wrong)”는 하나의 도덕적 원리이고 “살인”은 도덕적 견지에서 볼 때 완전한 관념이다. 따라서 그 원리를 표현하는 문장속의 “잘못이다”라는 단어는 중복된 혹은 덧붙여진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거의 時限이 다한 병으로부터 고통을 겪고 있는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이다”는 하나의 도덕판단이다. 여기서 “거의 時限이 다한……죽이는것”은 도덕적 견지에서 볼 때 완전한 관념이 아니다 왜냐하면 위의 문장속의 “잘못이다”라는 단어는 “특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것”이 도덕적으로 禁止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분별요소(discriminator)로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별을 조금 달리해서 다음과 같이 구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도덕적 원리란 판단적 역할을 하지 않는 判斷以前의 분별요소의 작용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행위방식에 대한 설명을 주어야 할 경우 그들의 행위지침으로서 쉽게 인용될 수 있는, 도덕적 당위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의 구성원들은 특정한 행위들이나 우선적인 어떤 義務의 수행에 관해 분별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原理위에서 행동할 수 있다. 그들은 그들의 도덕적 당위판단에 대한 支持理由의 基盤으로서 그 원리들을 사용한다. 社會內에서 아무도 도덕적 원리들을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아무도 살인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그 원리들은 더 이상 판단이 아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행위가 살인에 관한 행위라고 確信한다면 “나는 살인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문장속의 ‘ought’는 덧붙여진 효력없는 것이다.

制度의 어느 한 義務를 다른 義務보다 우선시키는 것에 대한 정당화를 위하여 도덕적 당

23) 이 점에 대해서는 J. Kovesi, Moral Notion (London: Routledge, 1967), pp. 83-94. 참조

위 판단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도덕적 판단은 다시 다른 당위판단에 의해 정당화되고, 이렇게 해서 정당화를 위한 도덕적 판단들의 系列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계열의 궁극점이 다시 분별요소의 작용이 있는, 판단적 역할을 하는 당위판단으로 끝날 수는 없다. 그렇게되면 그 분별판단에 대해 다시 정당화가 要求되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것은 도덕적 원리로써 끝나리라고 생각된다. 이점에 대해서는 充分한 論議가 있어야 되겠지만 다음기회로 미룬다.

四. 結語

지금까지 制度的 義務에 대한 이해를 위해 構成的 規則과 “ought”的 몇 가지 基本的인 사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打算的(prudential)이고 戰術的(tactical)인 “ought”的 경우는 最上의 게임전략에 대한 묘사로 대치할 수 있을 것이며²⁴⁾ “ought”를 制度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must”的 意味를 띠게 된다. 그리고 “ought”를 道德的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대립하는 제도적 의무사이에서 전형적으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도덕적 계층에 속하는 義務들이 따로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우리는 한편으로 制度的 義務를 갖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道德的 義務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할 도덕적 의무를 갖고 있다는 말은 대립하는 상황속에서 그 어떤 것을 우선적인 것으로 수행할 그의 제도적 의무를 나타낸다. 우리는 어떤 학생이 가방과 모자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의무를 가지고 있고 또 도덕적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制度的 義務들을 갖고 있는 것이며 그들中 어떤 것은 특정한 상황속에서 道德的인 것으로 된다는 것이다. 社會共同體의 도덕적 믿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변화할 수 있다. 제도적 의무들중의 어느 한 의무가 우선하는 것에 대한 어떤 믿음들은 문제되지 않는다. 어떤 것들은 原理위에서 수행되고 다른 것들은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사회역사의 기능이다. 제도적 의무들이 어떤 사람의 제도적 상태를 올바로 묘사하는 것과 관련된 그 제도의 규칙들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것과 같이, 社會內에서 지지할만한 모든 도덕적 당위판단들이 도덕적 원리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면 편리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도덕적 당위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람은 그의 판단을 원리들로부터 推論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도덕적 원리를 인용하거나 그것에 유추해서 그의 도덕적 판단을 정당화할 것이다.

24) 게임 이론에 관한 분석이 가능하므로 best play 전략에 대한 묘사로 마풀 수 있다.